

ESCO(에너지절약전문기업)

• 작성일 : 2015.12.01.

□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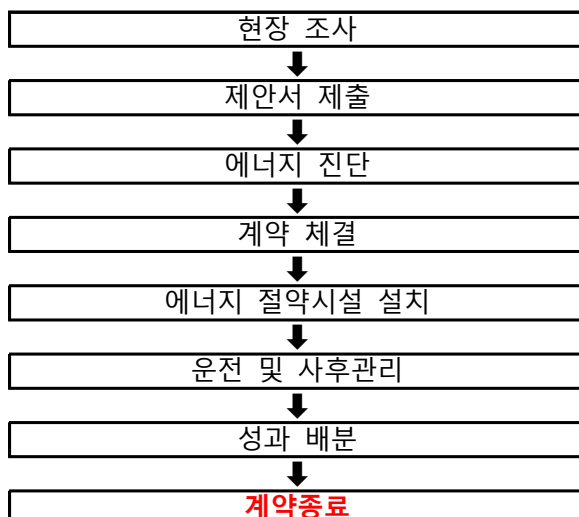
ESCO 투자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, ESCO기업이 기술력 또는 투자비용을 조달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, **예상절감량 또는 보증절감량으로**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.

(주)신일이앤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장비, 자산, ESCO전문 기술인력을 갖추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많은 경험과 투자를 바탕으로 M&V기법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, ICT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.

□ 주요 업무

구분	업무 내용
ESCO 투자사업	·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이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, 에너지절감비용으로 투자비용 회수
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	· 온실가스.에너지 목표관리 업체에서 노후화된 시설의 설치 또는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추진
절약시설 설치사업	· 노후보일러 교체, 폐열회수장치/고효율LED/가스냉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
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	· 에너지효율등급표시 기자재 중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, 고효율 에너지기자재, 대기전력저감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
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	·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전력 부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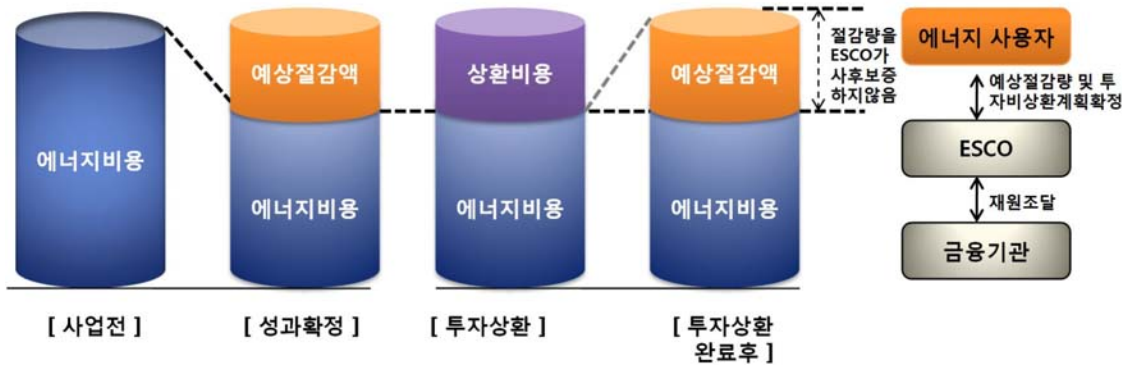
□ 진행 절차



□ ESCO 계약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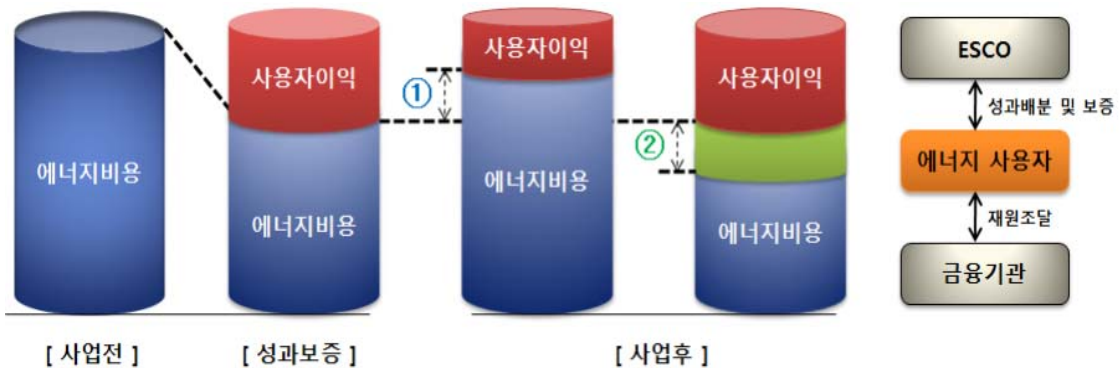
○ 성과 확정 계약

ESCO기업이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산출한 **예상절감량**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용자의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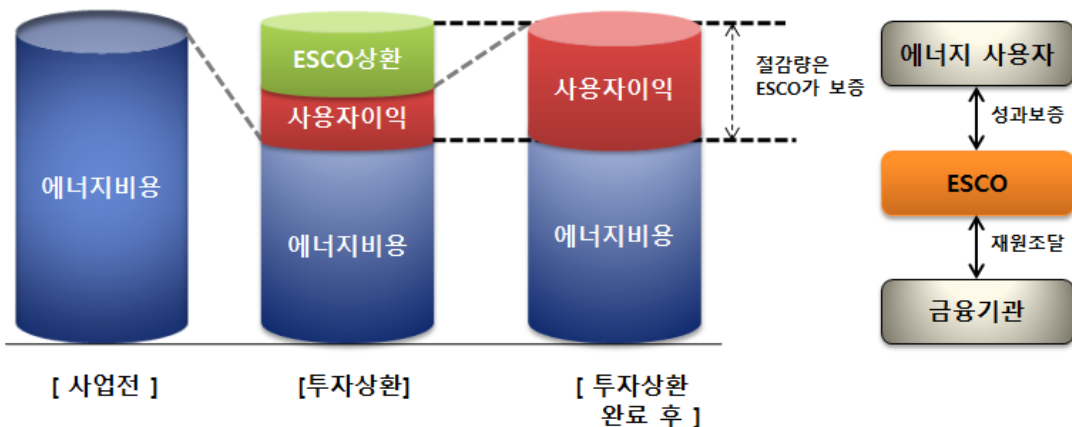
○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 보증 계약

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ESCO기업은 시설투자 에 의한 절감량을 보증하여 보증절감량을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



○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 보증 계약

ESCO기업이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에너지사용자는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절감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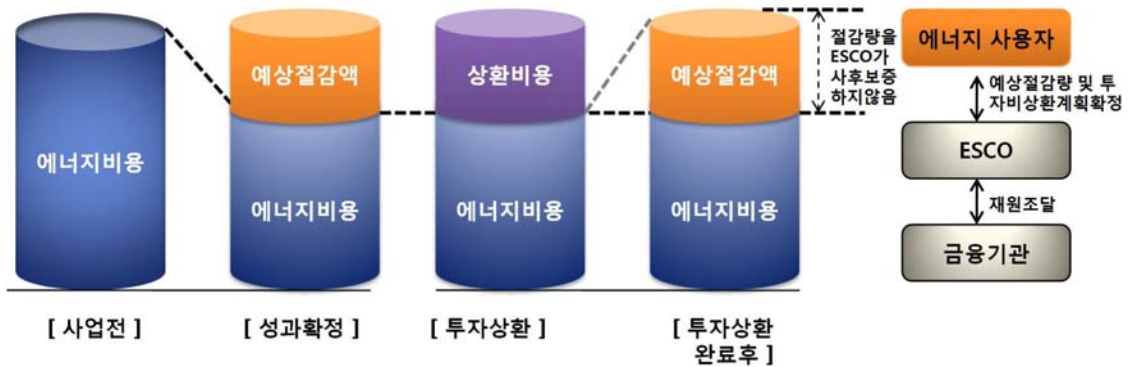


ESCO 계약 방식

□ 성과 확정 계약

• 개념

ESCO기업이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산출한 **예상절감량**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용자의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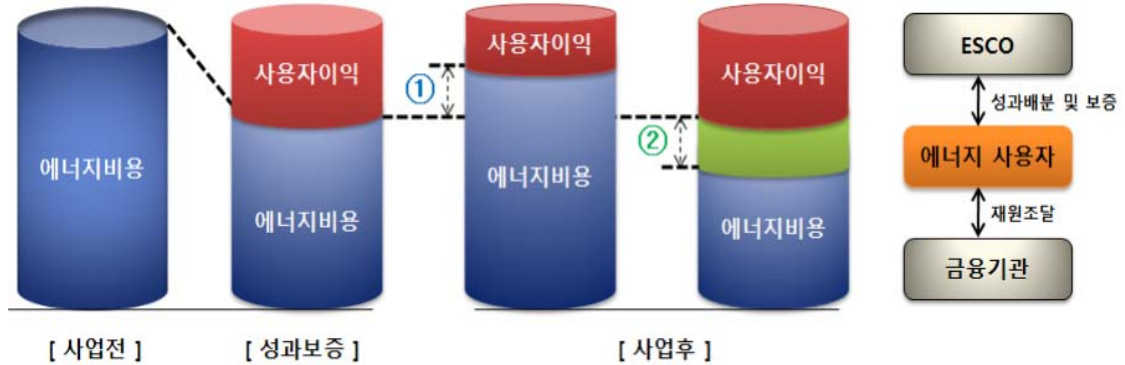


- 설치 후 성과보증을 하지 않는 만큼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추진하고, 예상 에너지절감량으로 성과를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및 ESCO기업 모두 예상에너지절감량의 충분한 검토와 확인 필요
- '성과보증'에 대한 ESCO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

□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 보증 계약

• 개념

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ESCO기업은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량을 보증하여 보증절감량을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



① 보증절감량 > 실적절감량: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

② 보증절감량 < 실적절감량: ESCO가 에너지사용자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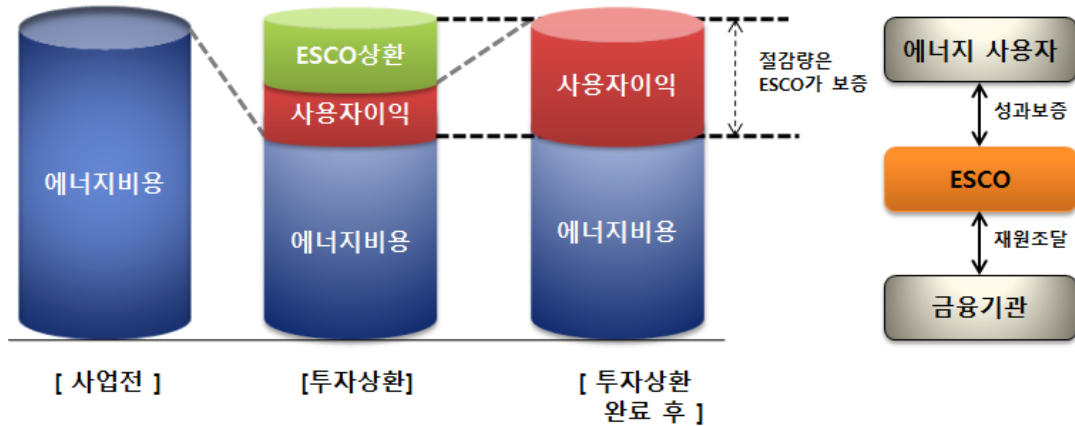
③ 보증절감량 = 실적절감량: 계약에 의한 사후관리절차 진행후 사업종료

- ESCO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을 설정하고,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
-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ESCO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없지만, ESCO기업은 에너지절감량에 대한 성과보증 책임이 있음

□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 보증 계약

• 개념

ESCO기업이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에너지사용자는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절감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



- ESCO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을 설정하고,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
- ESCO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과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자에게 장점이 있는 반면 ESCO기업은 기술적 및 경제적 책임 모두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

ESCO 투자사업 흐름도

□ 투자 상담

-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기업간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상담
- ESCO기업은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간이 제안서를 제시

□ 에너지 관리현황 진단 및 사업추진 결정(계약 체결)

- 정밀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시
- ESCO기업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전문기업(ESCO기업)과 ESCO투자사업 계약 체결을 결정

□ 절약시설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

- ESCO기업은 절약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사후관리를 실시
- 에너지사용시설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사후관리(MRV)를 실시

□ 계약 종료

계약에 따른 투자회수가 끝나면 ESCO투자사업 계약은 종료되고, 이 시점부터 에너지 절감비용 전액이 에너지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감



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

□ 개요

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

□ 지원 내용

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중견기업 100분의 5, 중소기업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)

□ 지원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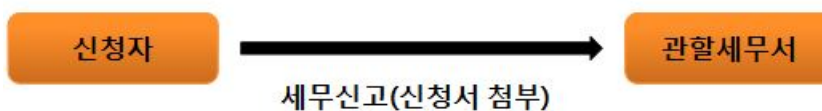
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□ 대상 시설

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, 별표8의3」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)

□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

- 기획재정부령 등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
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



- 그 밖의 시설인 경우
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

□ '그 밖의 시설'의 대상 및 확인 절차

- 시설투자확인 대상설비
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설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8의 3] 에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시설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
- '그 밖의 시설'에 대한 시설투자 확인을 신청 받으려면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